DMC 2차 IPARK 입주자 모집공고(案)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2015.12.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5.26.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2순위)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형 85㎡초과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4항에 따라 '청약가점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40%만 가점제가 적용됨)

■ 본 아파트는 개편된 주택청약제도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자격조건 완화 및 순위체계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24회 납입' → '1년 이상'으로 완화(단, 청약통장별 해당 가입은행의 납입인정 예치금액이 지역별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 기존 '1,2,3,순위' 방식을 '1,2순위'방식으로 간소화
•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시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만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됨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청약제한 기간(3개월)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 '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5.12.29.이후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전매금지 및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주택법」제41조의2 및「주택법시행령」제45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 가능한 날(2016.05.10.)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2009.4.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당첨자나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일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할 때 해당 최하층을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96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9-10번지 일대(남가좌동 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22층 13개동 총 1,061세대(조합분양 444세대, 임대 47세대, 보류지 8세대) 중 아파트 일반공급 562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분 4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분 5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4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분 16세대 포함)

▣ 공급대상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세대별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저층 우선배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민영 주택		59.9100A	59A	59.9100	21.2500	81.1600	44.1000	125.2600	34.1000	6	1	1	1		3	
		59.8000B	59B	59.8000	18.6200	78.4200	44.0300	122.4500	32.9500	2					2	
		59.9900C	59C	59.9900	18.2500	78.2400	44.1600	122.4000	32.8800	2					2	
		84.9000A	84A	84.9000	24.7600	109.6600	62.4900	172.1500	46.0800	73	7	7	7	2	50	6
		84.9800B	84B	84.9800	25.4300	110.4100	62.5600	172.9700	46.4000	100	11	11	11	4	63	6
		84.9700B1	84B1	84.9700	25.4300	110.4000	62.5400	172.9400	46.3900	25	2	2	2	1	18	2
		84.9700C	84C	84.9700	24.7300	109.7000	62.5500	172.2500	46.1000	71	7	7	7	2	48	6
		84.9400D	84D	84.9400	22.6600	107.6000	62.5300	170.1300	45.2100	84	8	8	8	2	58	8
		84.9500E	84E	84.9500	23.3100	108.2600	62.5400	170.8000	45.4900	85	8	9	8	2	58	8
		103.8900A	103A	103.8900	24.1400	128.0300	76.4800	204.5100	53.8000	30		3		1	26	2
		103.1900B	103B	103.1900	23.6200	126.8100	75.9600	202.7700	53.2900	45		4		1	40	3
		114.8100	114	114.8100	26.4800	141.2900	84.5100	225.8000	59.3700	39		4		1	34	2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2호 다목 8에 의거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주택형	동(라인)	층수	세대수	공급가액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30%
					대지비	건축비	분양가격	1차	2차 (2016-07-18)	2016-11-11	2017-01-12	2017-05-12	2018-01-12	2018-05-10	2018-08-10	입주지정일
59A	102동(4,5호)	4	1	454,100,000	226,910,781	227,189,219	454,100,000	10,000,000	3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136,230,000
	104동(5,6호)	17	2	460,900,000	230,308,696	230,591,304	460,900,000	10,000,000	3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46,090,000	138,270,000
		18	1	463,300,000	231,507,960	231,792,040	463,300,000	10,000,000	36,33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46,330,000	138,990,000
	105동(1,2호)	13	1	466,400,000	233,057,010	233,342,990	466,400,000	10,000,000	3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46,640,000	139,920,000
		17	1	471,100,000	235,405,569	235,694,431	471,100,000	10,000,000	3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47,110,000	141,330,000
59B	105동(4,5호)	20	1	445,000,000	222,363,571	222,636,429	445,000,000	10,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21	1	447,300,000	223,512,865	223,787,135	447,300,000	10,000,000	3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134,190,000
59C	105동(3호)	21	1	454,300,000	227,010,719	227,289,281	454,300,000	10,000,000	3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45,430,000	136,290,000
	105동(6호)	16	1	441,000,000	220,364,797	220,635,203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132,300,000
84A	106동 107동 (3호)	1	2	493,300,000	246,498,763	246,801,237	493,300,000	10,000,000	3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147,990,000
		2	2	509,600,000	254,643,765	254,956,235	509,600,000	10,000,000	4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152,880,000
		3	2	525,800,000	262,738,799	263,061,201	525,800,000	10,000,000	4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52,580,000	157,740,000
		4	2	536,700,000	268,185,457	268,514,543	536,700,000	10,000,000	4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161,010,000
		5~9	9	542,100,000	270,883,801	271,216,199	542,100,000	10,000,000	4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162,630,000
		14~15	4	547,500,000	273,582,146	273,917,854	547,500,000	10,000,000	4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16	2	553,000,000	276,330,460	276,669,54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08동(1,2호)	1	1	500,700,000	250,196,494	250,503,506	500,700,000	10,000,000	40,070,000	50,070,000	50,070,000	50,070,000	50,070,000	50,070,000	50,070,000	150,210,000
		2	1	517,200,000	258,441,435	258,758,565	517,200,000	10,000,000	4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51,720,000	155,160,000
		3	2	533,700,000	266,686,377	267,013,623	533,700,000	10,000,000	43,370,000	53,370,000	53,370,000	53,370,000	53,370,000	53,370,000	53,370,000	160,110,000
		4	2	544,700,000	272,183,004	272,516,996	544,700,000	10,000,000	44,470,000	54,470,000	54,470,000	54,470,000	54,470,000	54,470,000	54,470,000	163,410,000
		5~8	8	550,200,000	274,931,318	275,268,682	550,200,000	10,000,000	4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165,060,000
		16~19	8	558,500,000	279,078,774	279,421,226	558,500,000	10,000,000	4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167,550,000
		20~21	4	561,200,000	280,427,946	280,772,054	561,200,000	10,000,000	4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56,120,000	168,360,000

		22	2	564,000,000	281,827,087	282,172,913	564,000,000	10,000,000	4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113동(1,2호)	1	1	508,200,000	253,944,195	254,255,805	508,200,000	10,000,000	4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152,460,000
		2	1	524,900,000	262,289,075	262,610,925	524,900,000	10,000,000	42,490,000	52,490,000	52,490,000	52,490,000	52,490,000	52,490,000	52,490,000	157,470,000
		3	2	541,700,000	270,683,924	271,016,076	541,700,000	10,000,000	4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162,510,000
		4	2	552,800,000	276,230,521	276,569,479	552,800,000	10,000,000	4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165,840,000
		5~8	8	558,400,000	279,028,804	279,371,196	558,400,000	10,000,000	4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167,520,000
		18~19	4	566,800,000	283,226,229	283,573,771	566,800,000	10,000,000	4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170,040,000
		20	2	569,600,000	284,625,370	284,974,630	569,600,000	10,000,000	4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56,960,000	170,880,000
		21	2	572,400,000	286,024,512	286,375,488	572,400,000	10,000,000	4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171,720,000
84B	102동(1,2호) 103동(2,3호)	2	2	510,300,000	254,993,551	255,306,449	510,300,000	10,000,000	41,030,000	51,030,000	51,030,000	51,030,000	51,030,000	51,030,000	51,030,000	153,090,000
		3	4	526,600,000	263,138,553	263,461,447	526,600,000	10,000,000	4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52,660,000	157,980,000
		4	4	537,400,000	268,535,242	268,864,758	537,400,000	10,000,000	4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53,740,000	161,220,000
		5~9	20	542,900,000	271,283,556	271,616,444	542,900,000	10,000,000	4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54,290,000	162,870,000
		16~19	10	551,000,000	275,331,073	275,668,927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0~21	4	553,700,000	276,680,245	277,019,755	553,700,000	10,000,000	4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166,110,000
		22	2	556,500,000	278,079,387	278,420,613	556,500,000	10,000,000	4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55,650,000	166,950,000
	104동(2,3호)	1	1	489,100,000	244,400,050	244,699,950	489,100,000	10,000,000	3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48,910,000	146,730,000
		2	1	505,300,000	252,495,084	252,804,916	505,300,000	10,000,000	40,530,000	50,530,000	50,530,000	50,530,000	50,530,000	50,530,000	50,530,000	151,590,000
		3	2	521,400,000	260,540,148	260,859,852	521,400,000	10,000,000	4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156,420,000
		4	2	532,100,000	265,886,867	266,213,133	532,100,000	10,000,000	4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53,210,000	159,630,000
		5~9	10	537,500,000	268,585,212	268,914,788	537,500,000	10,000,000	4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161,250,000
		19	2	545,600,000	272,632,728	272,967,272	545,600,000	10,000,000	44,56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54,560,000	163,680,000
		20~21	4	548,300,000	273,981,901	274,318,099	548,300,000	10,000,000	4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164,490,000
		22	2	551,000,000	275,331,073	275,668,927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108동(3,4호)	1	2	491,600,000	245,649,284	245,950,716	491,600,000	10,000,000	3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147,480,000
		2	2	507,800,000	253,744,317	254,055,683	507,800,000	10,000,000	40,780,000	50,780,000	50,780,000	50,780,000	50,780,000	50,780,000	50,780,000	152,340,000
		3	2	524,000,000	261,839,351	262,160,649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4	2	534,800,000	267,236,040	267,563,960	534,800,000	10,000,000	4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53,480,000	160,440,000
		5~8	8	540,200,000	269,934,384	270,265,616	540,200,000	10,000,000	4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54,020,000	162,060,000
		16~19	8	548,300,000	273,981,901	274,318,099	548,300,000	10,000,000	4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54,830,000	164,490,000
		20~21	4	551,000,000	275,331,073	275,668,927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22	2	553,700,000	276,680,245	277,019,755	553,700,000	10,000,000	4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55,370,000	166,110,000
84B1	106동(2호)	1	1	488,700,000	244,200,173	244,499,827	488,700,000	10,000,000	3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146,610,000
		2	1	504,800,000	252,245,237	252,554,763	504,800,000	10,000,000	4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151,440,000
		3	1	520,900,000	260,290,301	260,609,699	520,900,000	10,000,000	4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156,270,000
		4	1	531,700,000	265,686,990	266,013,010	531,700,000	10,000,000	4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159,510,000
		5~8	4	537,000,000	268,335,365	268,664,635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14~15	2	542,400,000	271,033,710	271,366,290	542,400,000	10,000,000	4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162,720,000
		16	1	547,800,000	273,732,054	274,067,946	547,800,000	10,000,000	4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164,340,000
	107동(2호)	1	1	488,700,000	244,200,173	244,499,827	488,700,000	10,000,000	3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146,610,000
		2	1	504,800,000	252,245,237	252,554,763	504,800,000	10,000,000	4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50,480,000	151,440,000
		3	1	520,900,000	260,290,301	260,609,699	520,900,000	10,000,000	4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52,090,000	156,270,000
		4	1	531,700,000	265,686,990	266,013,010	531,700,000	10,000,000	4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53,170,000	159,510,000
		5~8	4	537,000,000	268,335,365	268,664,635	537,000,000	10,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14~15	2	542,400,000	271,033,710	271,366,290	542,400,000	10,000,000	4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54,240,000	162,720,000
		16~18	3	545,100,000	272,382,882	272,717,118	545,100,000	10,000,000	4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54,510,000	163,530,000
		19	1	547,800,000	273,732,054	274,067,946	547,800,000	10,000,000	4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54,780,000	164,340,000
84C	103동(1호)	1	1	502,900,000	251,295,819	251,604,181	502,900,000	10,000,000	4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150,870,000
		2	1	519,400,000	259,540,761	259,859,239	519,400,000	10,000,000	4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3	1	536,000,000	267,835,672	268,164,328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4	1	547,100,000	273,382,269	273,717,731	547,100,000	10,000,000	4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164,130,000
		5~9	5	552,600,000	276,130,582	276,469,418	552,600,000	10,000,000	4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165,780,000
		16~17	2	560,900,000	280,278,038	280,621,962	560,900,000	10,000,000	46,090,000	56,090,000	56,090,000	56,090,000	56,090,000	56,090,000	56,090,000	168,270,000
		18	1	563,700,000	281,677,179	282,022,821	563,700,000	10,000,000	4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169,110,000
	103동(4호)	1	1	493,000,000	246,348,855	246,651,145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2	1	509,300,000	254,493,857	254,806,143	509,300,000	10,000,000	4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50,930,000	152,790,000
		3	1	525,500,000	262,588,891	262,911,109	525,500,000	10,000,000	4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157,650,000
		4	1	536,300,000	267,985,580	268,314,420	536,300,000	10,000,000	4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53,630,000	160,890,000
		5~9	5	541,800,000	270,733,893	271,066,107	541,800,000	10,000,000	4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54,180,000	162,540,000
		19	1	549,900,000	274,781,410	275,118,590	549,900,000	10,000,000	4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54,990,000	164,970,000
		20~21	2	552,600,000	276,130,582	276,469,418	552,600,000	10,000,000	4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165,780,000
		22	1	555,400,000	277,529,724	277,870,276	555,400,000	10,000,000	45,540,000	55,540,000	55,540,000	55,540,000	55,540,000	55,540,000	55,540,000	166,620,000
	104동(1호)	1	1	497,900,000	248,797,352	249,102,648	497,900,000	10,000,000	3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149,370,000
		2	1	514,300,000	256,992,324	257,307,676	514,300,000	10,000,000	4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154,290,000
		3	1	530,700,000	265,187,297	265,512,703	530,700,000	10,000,000	4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159,210,000
		4	1	541,700,000	270,683,924	271,016,076	541,700,000	10,000,000	4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162,510,000
		5~9	5	547,100,000	273,382,269	273,717,731	547,100,000	10,000,000	4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164,130,000
		16	1	555,300,000	277,479,755	277,820,245	555,300,000	10,000,000	4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166,590,000
		17	1	558,100,000	278,878,896	279,221,104	558,100,000	10,000,000	4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167,430,000
	104동(4호)	1	1	488,100,000	243,900,357	244,199,643	488,100,000	10,000,000	3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48,810,000	146,430,000
		2	1	504,200,000	251,945,421	252,254,579	504,200,000	10,000,000	4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50,420,000	151,260,000
		3	1	520,300,000	259,990,485	260,309,515	520,300,000	10,000,000	4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52,030,000	156,090,000
		4	1	531,000,000	265,337,205	265,662,795	531,000,000	10,000,000	4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5~9	5	536,400,000	268,035,549	268,364,451	536,400,000	10,000,000	4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53,640,000	160,920,000
		17~18	2	544,400,000	272,033,096	272,366,904	544,400,000	10,000,000	4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54,440,000	163,320,000
		19	1	547,200,000	273,432,238	273,767,762	547,200,000	10,000,000	44,720,000	54,720,000	54,720,000	54,720,000	54,720,000	54,720,000	54,720,000	164,160,000
	106동(1호)	1	1	497,900,000	248,797,352	249,102,648	497,900,000	10,000,000	3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49,790,000	149,370,000
		2	1	514,300,000	256,992,324	257,307,676	514,300,000	10,000,000	4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51,430,000	154,290,000
		3	1	530,700,000	265,187,297	265,512,703	530,700,000	10,000,000	4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159,210,000
		4	1	541,700,000	270,683,924	271,016,076	541,700,000	10,000,000	4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162,510,000
		5~8	4	547,100,000	273,382,269	273,717,731	547,100,000	10,000,000	4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164,130,000
		14~15	2	552,600,000	276,130,582	276,469,418	552,600,000	10,000,000	4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165,780,000
		16	1	558,100,000	278,878,896	279,221,104	558,100,000	10,000,000	4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167,430,000
	107동(1호)	3	1	530,700,000	265,187,297	265,512,703	530,700,000	10,000,000	4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159,210,000
		4	1	541,700,000	270,683,924	271,016,076	541,700,000	10,000,000	4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54,170,000	162,510,000
		5~8	4	547,100,000	273,382,269	273,717,731	547,100,000	10,000,000	4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54,710,000	164,130,000
		14~15	2	552,600,000	276,130,582	276,469,418	552,600,000	10,000,000	4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55,260,000	165,780,000
		16~18	3	555,300,000	277,479,755	277,820,245	555,300,000	10,000,000	4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55,530,000	166,590,000
		19	1	558,100,000	278,878,896	279,221,104	558,100,000	10,000,000	4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55,810,000	167,430,000
84D	101동(1호)	1	1	497,100,000	248,397,598	248,702,402	497,100,000	10,000,000	3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49,710,000	149,130,000
		2	1	513,500,000	256,592,570	256,907,430	513,500,000	10,000,000	41,35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51,350,000	154,050,000
		3	1	529,800,000	264,737,572	265,062,428	529,800,000	10,000,000	4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158,940,000
		4	1	540,800,000	270,234,200	270,565,800	540,800,000	10,000,000	4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162,240,000
		5~9	5	546,200,000	272,932,544	273,267,456	546,200,000	10,000,000	4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163,860,000
		15	1	551,700,000	275,680,858	276,019,142	551,700,000	10,000,000	4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165,510,000
		16	1	554,400,000	277,030,031	277,369,969	554,400,000	10,000,000	4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166,320,000
		17	1	557,200,000	278,429,172	278,770,828	557,200,000	10,000,000	4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167,160,000
	101동(4호)	3	1	519,500,000	259,590,730	259,909,270	519,500,000	10,000,000	4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155,850,000
		4	1	530,200,000	264,937,450	265,262,550	530,200,000	10,000,000	4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159,060,000
		5~9	5	535,500,000	267,585,825	267,914,175	535,500,000	10,000,000	4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160,650,000
		18~19	2	543,600,000	271,633,342	271,966,658	543,600,000	10,000,000	4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163,080,000
		20	1	549,000,000	274,331,686	274,668,314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110동(1호)	1	1	492,200,000	245,949,100	246,250,900	492,200,000	10,000,000	3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49,220,000	147,660,000
		2	1	508,400,000	254,044,133	254,355,867	508,400,000	10,000,000	4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50,840,000	152,520,000
		3	1	524,600,000	262,139,167	262,460,833	524,600,000	10,000,000	4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52,460,000	157,380,000
		4	1	535,500,000	267,585,825	267,914,175	535,500,000	10,000,000	4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160,650,000

		5~8	4	540,900,000	270,284,169	270,615,831	540,900,000	10,000,000	4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162,270,000
		15	1	546,300,000	272,982,514	273,317,486	546,300,000	10,000,000	4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163,890,000
		16	1	549,000,000	274,331,686	274,668,314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17	1	551,700,000	275,680,858	276,019,142	551,700,000	10,000,000	4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165,510,000
	110동(4호)	3	1	514,400,000	257,042,294	257,357,706	514,400,000	10,000,000	4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51,440,000	154,320,000
		4	1	525,000,000	262,339,044	262,660,956	525,000,000	10,000,000	4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5~8	4	530,300,000	264,987,419	265,312,581	530,300,000	10,000,000	43,030,000	53,030,000	53,030,000	53,030,000	53,030,000	53,030,000	53,030,000	159,090,000
		12	1	535,600,000	267,635,794	267,964,206	535,600,000	10,000,000	4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160,680,000
		13	1	538,300,000	268,984,966	269,315,034	538,300,000	10,000,000	4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53,830,000	161,490,000
	111동(1호)	3	1	527,200,000	263,438,370	263,761,630	527,200,000	10,000,000	42,720,000	52,720,000	52,720,000	52,720,000	52,720,000	52,720,000	52,720,000	158,160,000
		4	1	538,100,000	268,885,028	269,214,972	538,100,000	10,000,000	4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161,430,000
		5~8	4	543,600,000	271,633,342	271,966,658	543,600,000	10,000,000	4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163,080,000
		16~19	4	551,700,000	275,680,858	276,019,142	551,700,000	10,000,000	4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55,170,000	165,510,000
		20	1	557,200,000	278,429,172	278,770,828	557,200,000	10,000,000	4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55,720,000	167,160,000
	111동(4호)	1	1	484,900,000	242,301,338	242,598,662	484,900,000	10,000,000	3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48,490,000	145,470,000
		2	1	500,900,000	250,296,433	250,603,567	500,900,000	10,000,000	4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50,090,000	150,270,000
		3	1	516,900,000	258,291,527	258,608,473	516,900,000	10,000,000	4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51,690,000	155,070,000
		4	1	527,600,000	263,638,247	263,961,753	527,600,000	10,000,000	4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52,760,000	158,280,000
		5~8	4	532,900,000	266,286,622	266,613,378	532,900,000	10,000,000	4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53,290,000	159,870,000
		16~19	4	540,900,000	270,284,169	270,615,831	540,900,000	10,000,000	4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54,090,000	162,270,000
		20	1	546,300,000	272,982,514	273,317,486	546,300,000	10,000,000	4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54,630,000	163,890,000
	112동(1호)	3	1	529,800,000	264,737,572	265,062,428	529,800,000	10,000,000	4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52,980,000	158,940,000
		4	1	540,800,000	270,234,200	270,565,800	540,800,000	10,000,000	4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54,080,000	162,240,000
		5~8	4	546,200,000	272,932,544	273,267,456	546,200,000	10,000,000	4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54,620,000	163,860,000
		18~19	2	554,400,000	277,030,031	277,369,969	554,400,000	10,000,000	4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166,320,000
		20	1	559,900,000	279,778,344	280,121,656	559,900,000	10,000,000	4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55,990,000	167,970,000
	112동(4호)	2	1	503,400,000	251,545,666	251,854,334	503,400,000	10,000,000	4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50,340,000	151,020,000
		3	1	519,500,000	259,590,730	259,909,270	519,500,000	10,000,000	4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51,950,000	155,850,000
		4	1	530,200,000	264,937,450	265,262,550	530,200,000	10,000,000	4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53,020,000	159,060,000
		5~8	4	535,500,000	267,585,825	267,914,175	535,500,000	10,000,000	4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53,550,000	160,650,000
		18~19	2	543,600,000	271,633,342	271,966,658	543,600,000	10,000,000	4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54,360,000	163,080,000
		20	1	549,000,000	274,331,686	274,668,314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84E	101동(2호)	1	1	498,200,000	248,947,260	249,252,740	498,200,000	10,000,000	3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149,460,000
		2	1	514,600,000	257,142,232	257,457,768	514,600,000	10,000,000	4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154,380,000
		3	1	531,100,000	265,387,174	265,712,826	531,100,000	10,000,000	4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159,330,000
		4	1	542,000,000	270,833,832	271,166,168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5~9	5	547,500,000	273,582,146	273,917,854	547,500,000	10,000,000	4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15	1	553,000,000	276,330,460	276,669,54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6	1	558,500,000	279,078,774	279,421,226	558,500,000	10,000,000	4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167,550,000
	101동(3호)	1	1	488,400,000	244,050,265	244,349,735	488,400,000	10,000,000	3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146,520,000
		2	1	504,500,000	252,095,329	252,404,671	504,500,000	10,000,000	4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151,350,000
		3	1	520,600,000	260,140,393	260,459,607	520,600,000	10,000,000	4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156,180,000
		4	1	531,400,000	265,537,082	265,862,918	531,400,000	10,000,000	4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159,420,000
		5~9	5	536,700,000	268,185,457	268,514,543	536,700,000	10,000,000	4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161,010,000
		18~19	2	544,800,000	272,232,974	272,567,026	544,800,000	10,000,000	4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20	1	550,200,000	274,931,318	275,268,682	550,200,000	10,000,000	4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165,060,000
	110동(2호)	1	1	493,300,000	246,498,763	246,801,237	493,300,000	10,000,000	3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49,330,000	147,990,000
		2	1	509,600,000	254,643,765	254,956,235	509,600,000	10,000,000	4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50,960,000	152,880,000
		3	1	525,900,000	262,788,768	263,111,232	525,900,000	10,000,000	4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52,590,000	157,770,000
		4	1	536,700,000	268,185,457	268,514,543	536,700,000	10,000,000	4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161,010,000
		5~8	4	542,100,000	270,883,801	271,216,199	542,100,000	10,000,000	4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162,630,000
		15	1	547,500,000	273,582,146	273,917,854	547,500,000	10,000,000	4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16	1	550,200,000	274,931,318	275,268,682	550,200,000	10,000,000	4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55,020,000	165,060,000
		17	1	553,000,000	276,330,460	276,669,54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10동(3호)	3	1	515,500,000	257,591,957	257,908,043	515,500,000	10,000,000	4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51,550,000	154,650,000
		4	1	526,200,000	262,938,676	263,261,324	526,200,000	10,000,000	4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52,620,000	157,860,000
		5~8	4	531,500,000	265,587,051	265,912,949	531,500,000	10,000,000	4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159,450,000
		12~13	2	536,800,000	268,235,426	268,564,574	536,800,000	10,000,000	4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53,680,000	161,040,000
		14	1	539,500,000	269,584,599	269,915,401	539,500,000	10,000,000	43,950,000	53,950,000	53,950,000	53,950,000	53,950,000	53,950,000	53,950,000	161,850,000
	111동(2호)	1	1	495,800,000	247,747,996	248,052,004	495,800,000	10,000,000	39,580,000	49,580,000	49,580,000	49,580,000	49,580,000	49,580,000	49,580,000	148,740,000
		2	1	512,100,000	255,892,999	256,207,001	512,100,000	10,000,000	4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51,210,000	153,630,000
		3	1	528,500,000	264,087,971	264,412,029	528,500,000	10,000,000	4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52,850,000	158,550,000
		4	1	539,400,000	269,534,629	269,865,371	539,400,000	10,000,000	4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161,820,000
		5~8	4	544,800,000	272,232,974	272,567,026	544,800,000	10,000,000	4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16~17	2	553,000,000	276,330,460	276,669,54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8	1	555,700,000	277,679,632	278,020,368	555,700,000	10,000,000	45,570,000	55,570,000	55,570,000	55,570,000	55,570,000	55,570,000	55,570,000	166,710,000
	111동(3호)	1	1	486,000,000	242,851,001	243,148,999	486,000,000	10,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2	1	502,100,000	250,896,065	251,203,935	502,100,000	10,000,000	4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50,210,000	150,630,000
		3	1	518,100,000	258,891,159	259,208,841	518,100,000	10,000,000	4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51,810,000	155,430,000
		4	1	528,800,000	264,237,879	264,562,121	528,800,000	10,000,000	4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52,880,000	158,640,000
		5~8	4	534,100,000	266,886,254	267,213,746	534,100,000	10,000,000	4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53,410,000	160,230,000
		16~17	2	542,100,000	270,883,801	271,216,199	542,100,000	10,000,000	4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162,630,000
		18	1	544,800,000	272,232,974	272,567,026	544,800,000	10,000,000	4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54,480,000	163,440,000
	112동(2호)	1	1	498,200,000	248,947,260	249,252,740	498,200,000	10,000,000	3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49,820,000	149,460,000
		2	1	514,600,000	257,142,232	257,457,768	514,600,000	10,000,000	4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51,460,000	154,380,000
		3	1	531,100,000	265,387,174	265,712,826	531,100,000	10,000,000	4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53,110,000	159,330,000
		4	1	542,000,000	270,833,832	271,166,168	542,000,000	10,000,000	4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5~8	4	547,500,000	273,582,146	273,917,854	547,500,000	10,000,000	4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15	1	553,000,000	276,330,460	276,669,540	553,000,000	10,000,000	4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55,300,000	165,900,000
		16	1	558,500,000	279,078,774	279,421,226	558,500,000	10,000,000	4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55,850,000	167,550,000
	112동(3호)	1	1	488,400,000	244,050,265	244,349,735	488,400,000	10,000,000	3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48,840,000	146,520,000
		2	1	504,500,000	252,095,329	252,404,671	504,500,000	10,000,000	4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50,450,000	151,350,000
		3	1	520,600,000	260,140,393	260,459,607	520,600,000	10,000,000	4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52,060,000	156,180,000
		4	1	531,400,000	265,537,082	265,862,918	531,400,000	10,000,000	4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53,140,000	159,420,000
		5~8	4	536,700,000	268,185,457	268,514,543	536,700,000	10,000,000	4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161,010,000
		15	1	542,100,000	270,883,801	271,216,199	542,100,000	10,000,000	4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54,210,000	162,630,000
		16	1	547,500,000	273,582,146	273,917,854	547,500,000	10,000,000	4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103A	109동(2,3호)	1	1	536,700,000	268,185,457	268,514,543	536,700,000	10,000,000	4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53,670,000	161,010,000
		2	1	554,400,000	277,030,031	277,369,969	554,400,000	10,000,000	4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55,440,000	166,320,000
		3	2	572,100,000	285,874,604	286,225,396	572,100,000	10,000,000	4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57,210,000	171,630,000
		4	2	583,900,000	291,770,986	292,129,014	583,900,000	10,000,000	48,390,000	58,390,000	58,390,000	58,390,000	58,390,000	58,390,000	58,390,000	175,170,000
		5	2	594,800,000	297,217,645	297,582,355	594,800,000	10,000,000	4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178,440,000
		6	2	589,800,000	294,719,178	295,080,822	589,800,000	10,000,000	4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176,940,000
		7	2	594,800,000	297,217,645	297,582,355	594,800,000	10,000,000	4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178,440,000
		8	2	589,800,000	294,719,178	295,080,822	589,800,000	10,000,000	4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58,980,000	176,940,000
		9	2	594,800,000	297,217,645	297,582,355	594,800,000	10,000,000	4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59,480,000	178,440,000
		10	2	595,700,000	297,667,369	298,032,631	595,700,000	10,000,000	4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178,710,000
		11	2	600,700,000	300,165,836	300,534,164	600,700,000	10,000,000	5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180,210,000
		12	2	595,700,000	297,667,369	298,032,631	595,700,000	10,000,000	4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178,710,000
		13	2	600,700,000	300,165,836	300,534,164	600,700,000	10,000,000	5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180,210,000
		14	2	595,700,000	297,667,369	298,032,631	595,700,000	10,000,000	4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59,570,000	178,710,000
		15	2	600,700,000	300,165,836	300,534,164	600,700,000	10,000,000	5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60,070,000	180,210,000
		16	2	601,600,000	300,615,560	300,984,440	601,600,000	10,000,000	5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180,480,000
103B	109동(1호)	1	1	540,000,000	269,834,445	270,165,555	540,000,000	10,000,000	4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2	1	557,800,000	278,728,988	279,071,012	557,800,000	10,000,000	45,780,000	55,780,000	55,780,000	55,780,000	55,780,000	55,780,000	55,780,000	167,340,000
		3	1	575,600,000	287,623,531	287,976,469	575,600,000	10,000,000	4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57,560,000	172,680,000

		4	1	587,400,000	293,519,913	293,880,087	587,400,000	10,000,000	48,740,000	58,740,000	58,740,000	58,740,000	58,740,000	58,740,000	58,740,000	176,220,000
		5	1	597,400,000	298,516,848	298,883,152	597,400,000	10,000,000	4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179,220,000
		6	1	593,400,000	296,518,074	296,881,926	593,400,000	10,000,000	4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178,020,000
		7	1	597,400,000	298,516,848	298,883,152	597,400,000	10,000,000	4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179,220,000
		8	1	593,400,000	296,518,074	296,881,926	593,400,000	10,000,000	4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59,340,000	178,020,000
		9	1	597,400,000	298,516,848	298,883,152	597,400,000	10,000,000	4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59,740,000	179,220,000
		10	1	599,300,000	299,466,265	299,833,735	599,300,000	10,000,000	4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179,790,000
		11	1	603,300,000	301,465,039	301,834,961	603,300,000	10,000,000	5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180,990,000
		12	1	599,300,000	299,466,265	299,833,735	599,300,000	10,000,000	4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179,790,000
		13	1	603,300,000	301,465,039	301,834,961	603,300,000	10,000,000	5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180,990,000
		14	1	599,300,000	299,466,265	299,833,735	599,300,000	10,000,000	4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59,930,000	179,790,000
		15	1	603,300,000	301,465,039	301,834,961	603,300,000	10,000,000	5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60,330,000	180,990,000
		16	1	605,300,000	302,464,426	302,835,574	605,300,000	10,000,000	5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60,530,000	181,590,000
	113동(3호)	1	1	546,900,000	273,282,330	273,617,670	546,900,000	10,000,000	4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54,690,000	164,070,000
		2	1	565,000,000	282,326,781	282,673,219	565,000,000	10,000,000	4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3	1	583,000,000	291,321,262	291,678,738	583,000,000	10,000,000	4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74,900,000
		4	1	595,000,000	297,317,583	297,682,417	595,000,000	10,000,000	4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78,500,000
		5	1	605,000,000	302,314,517	302,685,483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6	1	601,000,000	300,315,744	300,684,256	601,000,000	10,000,000	5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7	1	605,000,000	302,314,517	302,685,483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8	1	601,000,000	300,315,744	300,684,256	601,000,000	10,000,000	5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9	1	605,000,000	302,314,517	302,685,483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0	1	607,100,000	303,363,874	303,736,126	607,100,000	10,000,000	5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60,710,000	182,130,000
		11	1	611,100,000	305,362,647	305,737,353	611,100,000	10,000,000	5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61,110,000	183,330,000
		18	1	610,100,000	304,862,954	305,237,046	610,100,000	10,000,000	5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61,010,000	183,030,000
		19	1	614,100,000	306,861,728	307,238,272	614,100,000	10,000,000	5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61,410,000	184,230,000
		20	1	613,100,000	306,362,034	306,737,966	613,100,000	10,000,000	5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61,310,000	183,930,000
		21	1	620,100,000	309,859,888	310,240,112	620,100,000	10,000,000	5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62,010,000	186,030,000
	113동(6호)	3	1	571,600,000	285,624,757	285,975,243	571,600,000	10,000,000	4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57,160,000	171,480,000
		4	1	583,400,000	291,521,140	291,878,860	583,400,000	10,000,000	48,340,000	58,340,000	58,340,000	58,340,000	58,340,000	58,340,000	58,340,000	175,020,000
		5	1	593,300,000	296,468,104	296,831,896	593,300,000	10,000,000	4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177,990,000
		6	1	589,300,000	294,469,331	294,830,669	589,300,000	10,000,000	4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176,790,000
		7	1	593,300,000	296,468,104	296,831,896	593,300,000	10,000,000	4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177,990,000
		8	1	589,300,000	294,469,331	294,830,669	589,300,000	10,000,000	4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176,790,000
		9	1	593,300,000	296,468,104	296,831,896	593,300,000	10,000,000	4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59,330,000	177,990,000
		10	1	595,100,000	297,367,553	297,732,447	595,100,000	10,000,000	4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178,530,000
		11	1	599,100,000	299,366,326	299,733,674	599,100,000	10,000,000	4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59,910,000	179,730,000
		12	1	595,100,000	297,367,553	297,732,447	595,100,000	10,000,000	4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59,510,000	178,530,000
		18	1	598,100,000	298,866,633	299,233,367	598,100,000	10,000,000	49,810,000	59,810,000	59,810,000	59,810,000	59,810,000	59,810,000	59,810,000	179,430,000
		19	1	602,100,000	300,865,407	301,234,593	602,100,000	10,000,000	5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60,210,000	180,630,000
		20	1	601,000,000	300,315,744	300,684,256	601,000,000	10,000,000	5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60,100,000	180,300,000
		21	1	608,000,000	303,813,598	304,186,402	608,000,000	10,000,000	5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82,400,000
114	113동(4,5호)	1	2	568,000,000	283,825,861	284,174,139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2	2	586,700,000	293,170,128	293,529,872	586,700,000	10,000,000	4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58,670,000	176,010,000
		3	2	605,500,000	302,564,364	302,935,636	605,500,000	10,000,000	5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60,550,000	181,650,000
		4	2	617,900,000	308,760,563	309,139,437	617,900,000	10,000,000	5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61,790,000	185,370,000
		5	2	628,700,000	314,157,251	314,542,749	628,700,000	10,000,000	5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188,610,000
		6	2	624,200,000	311,908,631	312,291,369	624,200,000	10,000,000	5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187,260,000
		7	2	628,700,000	314,157,251	314,542,749	628,700,000	10,000,000	5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188,610,000
		8	2	624,200,000	311,908,631	312,291,369	624,200,000	10,000,000	5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62,420,000	187,260,000
		9	2	628,700,000	314,157,251	314,542,749	628,700,000	10,000,000	5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62,870,000	188,610,000
		10	2	630,400,000	315,006,730	315,393,270	630,400,000	10,000,000	5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189,120,000
		11	2	634,900,000	317,255,351	317,644,649	634,900,000	10,000,000	5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190,470,000
		12	2	630,400,000	315,006,730	315,393,270	630,400,000	10,000,000	5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189,120,000
		13	2	634,900,000	317,255,351	317,644,649	634,900,000	10,000,000	5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190,470,000
		14	2	630,400,000	315,006,730	315,393,270	630,400,000	10,000,000	5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63,040,000	189,120,000
		15	2	634,900,000	317,255,351	317,644,649	634,900,000	10,000,000	5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63,490,000	190,470,000
		16	1	633,500,000	316,555,780	316,944,220	633,500,000	10,000,000	5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190,050,000
		18	2	633,500,000	316,555,780	316,944,220	633,500,000	10,000,000	5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63,350,000	190,050,000
		19	2	638,000,000	318,804,400	319,195,600	638,000,000	10,000,000	5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63,800,000	191,400,000
		20	2	636,700,000	318,154,799	318,545,201	636,700,000	10,000,000	53,67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63,670,000	191,010,000
		21	2	644,300,000	321,952,469	322,347,531	644,300,000	10,000,000	5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64,430,000	193,29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2호 다목 8에 의거하여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공제되어 있습니다.

※ 세대수 공급금액은 동호수별로 상이하여 주택형별 최저·최고금액만 표기되어 있으니, 정확한 세대별 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면적합산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일부 1층 세대는 단지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필로티 시공으로 공급세대가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동일순위 경쟁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형 표시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주택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2호 다목 8에 의거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이 공제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 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금액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계약 시 선택사항임.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단지별,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최저층 주택배정 세대는 1층에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등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2016.05.31.(화) / 10:00~14:00	DMC 2차 IPARK 모델하우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5-7번지. 연락처 02 - 1670 - 1350]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6.06.09(수) / 16:00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5항에 의거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 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2.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40조에 의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의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의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12개월)이 된 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 가능함.

3.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청약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함.(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또는 세대원(다음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과 그 적용이 다름.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바람.(신청이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및 「장애인 복지법」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로 주택공급 신청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일반 / 다자녀가구 / 노부모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계약체결일 : 2016.06.14(화) ~ 2016.06.16(목) (3일간, 10:00~16:00,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59A	59B	59C	84A	84B	84B1	84C	84D	84E	103A	103B	114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			7	11	2	7	8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50%)	1			3	6	1	3	4	5	1	2	2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4	5	1	4	4	4	2	2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7	11	2	7	8	8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	4	1	2	2	2	1	1	1
합계		3			23	37	7	23	26	27	4	5	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4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기관추천 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박사학위 취득 영구 귀국자, 우수선수 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신청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 5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다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미달시 타 시·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4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여야 함.

※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통계청 자료)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4원 이하	6,570,483원 이하

※ 6인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475,403원) + (1인당 평균소득(329,369원) * (N-5)) (※ N = 6인 이상시 가구원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임.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①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사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훈령 519호(2015.05.08)]"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건설량의 3%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한다)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함.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견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94호(2015.05.07.)]"에 따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O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 철거민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O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의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O		주민등록증	대리인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고,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거주 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약 가능함.
- 상기 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아파트로서 일반공급 세대수에서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하며, 85㎡초과 주택은 추첨제 100%로 공급 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2015.2.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위	신청 구분	신청 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1순위	85㎡ 이하	•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 가점제(40%) / 추첨제(60%)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자동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2016.06.01 (수)	• 접수장소 - 기업은행 홈페이지 (www.ibk.co.k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기업은행외 시중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접수시간 - 08:00 ~ 17:30	• 발표일시 - 2016. 06. 09. (수) • 발표장소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www.i-park.com/dmc)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추첨제(100%)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 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 추첨제		2016.06.02 (목)	• 접수장소 - 기업은행 홈페이지 (www.ibk.co.kr)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기업은행외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 접수시간 - 08:00 ~ 17:3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상기 인터넷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이며 청약 신청 중에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 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동일 순위 경쟁자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2순위는 주택청약 취급은행에서 신청가능함]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 견본주택 내에서는 현장수납 및 청약접수가 불가함.
- 가점제 적용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적용안내, 청약가점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로 규모를 선택할 경우 청약신청 당일까지 규모선택이 가능하나, 규모를 이미 선택한 경우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이후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구 분 (전용면적 기준)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 든 면 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 수협, NH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1순위 85㎡이하는 일반 공급물량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청약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 항목	가점	가 점 구 분	점수	가 점 구 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 점	84점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특별공급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 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관리대장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인정기준
- 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시 적용 제외

▣ 청약신청 접수방법

1.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2.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DMC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3.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주택소유 여부 선택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되며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초과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공급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 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1층이 없는 주택형은 해당 층 중 최저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함.

4. 청약신청 방법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일반)특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	• 견본주택 방문접수 (인터넷 신청 불가)	• 견본주택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5-7. DMC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2순위	• 인터넷 신청	• 기업은행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 기업은행 외 청약통장/인터넷뱅킹 가입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 일반공급 청약접수 종료시간인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5.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 대상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임.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 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6. 은행창구 청약신청 (일반분양 신청자 중 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 사용불가자)

구 분		구 비 서 류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순위 신청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 신청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서류(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 신청시 관계확인이 가능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도장 및 본인확인서류 (※ 청약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7. 2순위 청약 신청금

구 분	청약 신청금	비 고
전 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뱅킹 에서 자동출금 (청약신청전 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청약시(09:00~16:00) : 가능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8. 2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당첨자 포함)

환불기간	환불장소	은행창구 청약신청자 구비서류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6/10) 이후 평일 09:00~16:00	- 인터넷 청약신청자 :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 은행창구 청약신청자 :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본인확인인증표(창구 청약시와 동일) -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 본인 및 배우자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도장 및 본인확인증표(창구 청약시와 동일)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에서 환불받고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청구 청약자 중 접수은행 본인명의로 자동 환불 신청시, 당첨자발표 익일 영업일에 해당계좌로 자동 환불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일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가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인터넷 ·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IBK기업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IBK기업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터넷	이용방법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접속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주민번호/주택별 조회 → 주민등록번호/지역/당첨자발표일/주택관리번호 입력 → 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APT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6.06.09(목) ~ 2016.06.18.(일) (10일간)	
전화 (ARS)	전화번호	IBK기업은행 콜센터 1369 (서비스번호 : 5#→1#→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누름	
	이용기간	2016.06.09(목) ~ 2016.06.18(일) (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신청시 SMS당첨 통지서비스를 신청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06.09(목)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당첨 여부 문자메세지 전송 가능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정당 당첨자) : 2016.06.14.(화) ~ 2016.06.16(목) [3일간 / 시간 10:00 ~ 16:00]

◆ 계약장소 : DMC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본 공고문 하단의 견본주택 주소(약도)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당첨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 관리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IBK기업은행	202-069284-01-014	남가좌동제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외1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무통장 입금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기간을 무주택기간 가점에 산정한 분)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2005.7.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아래 참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 되지 않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 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단지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외국인(시민권자)은 계약전에 서울시 서대문구청에 토지 취득허가를 득한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7조,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해 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분양 미계약 동·호는 일반분양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임.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미통보시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문고,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장비 포함), 실내수영장, 근린생활시설 등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천원 / VAT 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8,800	880	7,920
59B	8,800	880	7,920
59C	8,800	880	7,920
84A	8,600	860	7,740
84B	10,200	1,020	9,180
84 B1	10,200	1,020	9,180
84C	8,500	850	7,650
84D	9,100	910	8,190
84E	8,000	800	7,200
103A	10,400	1,040	9,360
103B	9,200	920	8,280
114	10,600	1,060	9,540

2.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 추후 별도 안내예정

3. 유의사항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시공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이 가능한 기한 이후에는 계약 체결 및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함.(일정 별도 통지 예정)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함.(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단위 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확장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확장 형태에 따라 드레스룸 형태, 선반 개수, 사이즈 등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설치되는 가구량에 따라 확장금액에 반영됨

▣ 추가선택품목 [플러스 옵션]

1.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천원, VAT포함)

평형	설치위치		판매가	비고
59A	전체(4)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110	LG전자
	기본(2)	거실/주방+침실1(안방)	3,350	
59B	전체(4)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110	
	기본(2)	거실/주방+침실1(안방)	3,350	
59C	전체(4)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6,110	
	기본(2)	거실/주방+침실1(안방)	3,350	
84A	전체(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76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790	
84B	전체(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76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790	
84B1	전체(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76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790	
84C	전체(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76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790	
84D	전체(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76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790	
84E	전체(5)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	7,76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790	
103A	전체(6)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9,42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870	
103B	전체(6)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9,42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4,870	
114	전체(6)	거실+주방+침실1(안방)+침실2+침실3+침실4	9,430	
	기본(3)	거실+주방+침실1(안방)	5,360	

2. 가전

(단위 : 천원, VAT포함)

평형	유형	구분		제조사	판매가	비고
공통	빌트인냉장고	TBI냉장고(RS674CHQFSR)	패널별도	삼성	4,610	
		TBI냉장고(RS647LHQFSR)	패널별도	삼성	6,780	
		BIS냉장고(R-L712JCS)	패널별도	LG	5,230	
		BIS냉장고(R-L692JYS)	패널별도	LG	7,140	
		문짝패널교체(추가)		삼성/LG	220	
	빌트인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R-D222NW/WW)	패널포함	LG	1,450	
		김치냉장고(HBR-K265VRSL/R)		삼성	1,460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D1260MB)		LG	620	
		식기세척기(DWA-7501B)		동양	500	
	전기쿡탑 (3구쿡탑)	전기레인지(ERA-B303E)		동양	820	
		하이브리드(GRA-BH300H)		동양	820	
	오븐	스팀오븐(EON-B401SM)		동양	720	
		복합오븐(EON-B412M)		동양	530	
		광파오븐(MZ941CB)		LG	450	
	전동빨래건조대	A4010		에이치에비뉴	250	

3. 가구

(단위 : 천원, VAT포함)

평형	유형	구분	제조사	판매가	비고
103B	팬트리/가구	103B주방팬트리	코테F&D	2,530	주방가구 증가

4. 유의사항

◆ 추가선택 품목은 타입별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쿡탑, 광파오븐, 팬트리, 전동빨래건조대 등임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 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임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은 설치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쉬트 및 벽패널류 등), 가변형벽체,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틀(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마감, 발코니천장도장	천장틀 위 석고보드 마감
욕실	천장, 타일(바닥,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수전 및 헤드, 수전 등), 샤워부스, 욕실악세서리 일체, 욕실장, 바닥배수구커버(트랜치 포함), 욕실환풍기, 욕실스피커존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가스쿡탑, 주방액정TV 등 주방가전 일체	소방검사 관련 후드, 주방 배기덕트
조명기구	부착/매립/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조명포함,) 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59A	59B	59C	84A	84B	84 B1	비고
	18,800,000	18,000,000	18,000,000	25,200,000	25,400,000	24,900,000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은 일괄선택 사양임(개별선택불가)
금 액	84C	84D	84E	103A	103B	114	
	25,200,000	24,200,000	24,400,000	29,700,000	30,000,000	32,900,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범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월 : 2018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기타 잡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등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사업주체가 주관하는 본 사업 인·허가,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인가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그 소송 등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일정이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 지정일이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은 사업주체가 이행하여 사업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이에프티엔지니어링	㈜아이비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118,500,000	588,695,491	693,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보증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216,574,190,000	01282016-101-00056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주요내용

◆ 제1조 4호 [보증사고]
-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대지비 감정평가금액 및 기관

(단위 : 원)

감정평가기관	㈜가온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감정평가금액	277,399,943,005	273,342,511,415	275,371,227,210

※ 상기금액은 아파트 대지 전체 감정평가 금액임

▣ 공동주택성능 등급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친환경건축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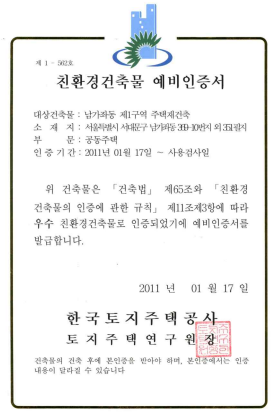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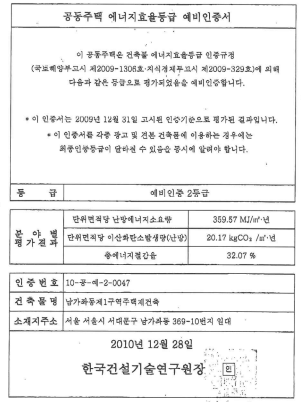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3.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5.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6.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7. 견본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8.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0.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14.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5.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16.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17.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와 협의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8.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19.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20.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21.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22.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2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4.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25.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

다.

2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7. 본 아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대내 설치되는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비상사다리" 또는 "인접세대 경계에 파괴 용이한 경량 칸막이"로 그 용도를 대신한 세대가 일부 있으니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고 물건 적치 등 해당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하향식 비상사다리" 적용세대 :59A, 59C 전 세대 / "인접세대 경계에 파괴 용이한 경량 칸막이" 적용세대 : 59B, 84B, 103A, 114 전 세대
28. 103A, 103B, 114 타입에는 개방형발코니가 설치되며, 개인이 임의로 확장할 수 없으며, 세대마다 개방형 발코니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9.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0.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31.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32.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33. 견본주택에는 84B, 84D, 103B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4. 견본주택 84B, 84D형에 설치된 유리벽은 전시용이므로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선택 할 수 없습니다.
35. 견본주택 103B형에 설치된 주방바닥타일은 전시용이므로 본공사시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선택 할 수 없습니다.
36. 103B형은 발코니 확장시 침실3을 다용도창고로 유상옵션 선택 가능하며, 창고도어 및 내부선반은 별도 유상옵션 품목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37.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38.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39.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0.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1.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42.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3.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합니다.
44.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5.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구획되며, 차량 진출입 동선은 분양아파트 동선과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46.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설계관련 및 기타 유의사항 [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기능/성능/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 복리시설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의 기준이 되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주택형에 따라 마감자재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액서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돌쌓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방음벽은 남측 증가로 주변에 약 5m 높이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경사로, 또는 외부 공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동 옥상녹화부분 계획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친환경 인증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층 층고는 기준층과 달라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사지에 계획된 단지 특성상 일부 주동은 지하주차장의 특정 층과 지하 주동 출입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배관 및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텐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에는 상시 통풍이 가능한 결로방지용 환기캡이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진행을 위하여 최종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 본 공사시 욕실1, 욕실2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 내부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침실1) 설치됩니다.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을 위한 실외기 시설이 외부 조경공간에 설치되며 그 설치 상세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Top Light(채광창),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외부 엘리베이터,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보육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주변과의 레벨 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옹벽, 석축 등의 설치에 의해 조망, 일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 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 카다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옥상에 설치될 계획입니다.(설치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명 : 남가좌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법인등록번호: 274171 - 0006619)

▣ 시공업체명 :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10111 – 0279433)

▣ DMC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55-7. DMC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 / 분양안내 : 02-1670-135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DMC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 바랍니다.